

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-73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9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사업을 위해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 연장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안정성 확보

주요내용

- 안전도시협의회 존속기한 연장(안 제16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21. 9. 16. ~ 2021. 10. 7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5
- 방침결정문 : 붙임6

< 붙임 1 >

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2021년 12월 31일” 을 “2026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시민안전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시민안전과장 윤 충 오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사회재난팀장 박 순 덕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강 선 희 (행정 2427)

< 부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존속기한) 협회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.	제16조(존속기한)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 -----.